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8~72

제출일자 : 2018. 10.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노인·여성·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통합복지시설인 쉼터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삶의 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군 삶의 쉼터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1(송정리 941-1)

다. 규 모 : 대지 15,057㎡, 건축면적 2,206.3㎡, 연면적 5,508.99㎡
- 노인·여성복지관 : 3,009.31㎡, 장애인복지관 2,499.68㎡

라. 사업내용 : 거창군 삶의 쉼터 운영

마. 위탁대상 사무

○ 시설 : 거창군 삶의 쉼터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 운영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위탁기간 : 2019.1.1. ~ 2023.12.31.(5년)

사.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아.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자. 소요예산

○ 시설운영비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거창군 삶의쉼터는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시설로 전문적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및 지역의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하고자 함
- 지난 2008년 개관이후 10년에 걸쳐 위탁 운영한 결과 시설평가에서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기에 통합복지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운영)

다. 향후계획

- 2018. 10. 22.(월) ~ 11. 5.(월) : 수탁자 모집 공고
- 2018. 11. 6.(화) ~ 11. 12.(월) : 수탁법인 신청 접수
- 2018. 11. 13.(화) ~ 11. 16.(금)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2018. 11. 19.(월) ~ 11. 23.(금) : 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 2018. 12월 중순 : 거창군 삶의 쉼터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018. 12월 하순 : 수탁법인 교체 시 인수·인계

라. 예산조치

- 2018년 종사자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계상함

마.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노인·여성·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른 수탁자 선정관련 공모 추진 계획입니다.

I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 제4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운영)

II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군 삶의 쉼터(노인·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1(송정리 941-1)
- 규 모 : 부지 15,057m² 연면적 : 5,508.99m²(지하 1층, 지상 3층)
 - 노인여성복지관 : 3,009,31m², 장애인복지관 : 2,499,68m²
- 직원편제 : 29명(노인·여성복지관 11명, 장애인복지관 18명)

III 시설연혁

- 시설착공 : 2005. 10. 11
- 시설준공 : 2008. 1. 9
- 시설개관 : 2008. 6. 26
- 위·수탁개요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최초 위탁 : 2008. 2. 19 ~ 2011. 2. 18(3년)
 - 1차 재위탁 : 2011. 2. 19 ~ 2014. 2. 18(3년)
 - 2차 재위탁 : 2014. 2. 19 ~ 2018. 12. 31(5년)

IV 수탁자 선정 방침

- 수탁법인의 공개모집으로 투명성 유지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보장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 시 재공고

V 위탁개요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주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만 경상남도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경상남도 내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위탁기간 : 5년(재계약 가능)
- 위탁업무
 - 삶의 쉼터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관리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신청·접수
 - 수탁법인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 고 : 거창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심의위원 : 9명(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 위원구성 :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 선정기준 :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평가결과(평가한 경우),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평가항목, 세부항목 별도 작성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협약체결 : 수탁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 예산집행 및 자부담 약정
 - 위탁계약 시 법인 전입금 예산액의 1%정도 부담
 - 위탁운영 체결 후 자체운영규정(채용, 회계, 인사 등에 관한 사항) 승인

IV 향후 추진일정

- 의회동의 : 2018. 10. 18.(목)까지
- 모집공고 : 2018. 10. 22.(월) ~ 11. 5.(월)
- 접 수 : 2018. 11. 6(화) ~ 11. 12.(월)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2018. 11. 13.(화) ~ 11. 16.(금)
 - 구성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
(※ 9명 이내로 민간위원 과반수이상 구성)
- 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 2018. 11. 19.(월) ~ 11. 23.(금)
 - 심의내용 : 공모에 응모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 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배점표에 따라 심사
- 위·수탁협약체결 및 공증 : 2018. 12월 중
- 운영법인 교체 시 인수·인계 : ~ 2018. 12월 말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 (운영)

①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삶의 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